

문서번호	수산팀-412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03.08
공개여부	공개

★담당자	팀장	유통본부장
김병일	최영규	03/08 김성수
협 조		
감 사		

수산시장 무단 설치 시설물 정비 계획

201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수산팀

수산물 시장 무단 설치 시설물 정비 계획

추진 배경

- 수산물 시장 배송복도에 수족관, 도마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활어, 킹크랩 등을 불법으로 판매
- 불법 무단영업 시설물 정비로 도매시장의 정상적 기능 회복

I

시설물 무단 설치

□ 설치장소 : 수산물 시장 배송복도 4번 기둥

□ 설치자 : 이동현(1960년생)

- 경매장 내에 소금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16.11.18 행정대집행을 시행한 자와 동일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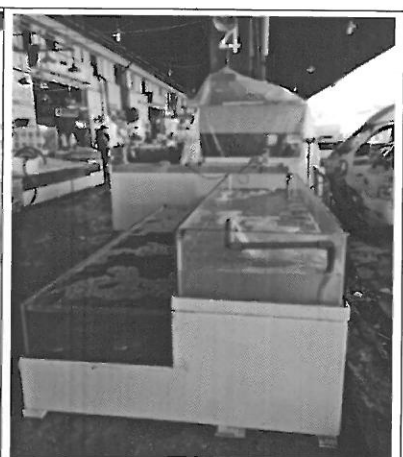
□ 무단시설물 : 수족관 3개, 도마2개, 기타 짐승, 버너 등

- 2017. 3. 4(토) 수족관 1개, 도마 1개 추가 설치

《무단 설치 시설물 현장 사진》



기존 시설물(배송복동 남측)



추가 설치(배송복도 북측)

□ 영업형태

-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킹크랩, 대게 등 갑각류와 활어 등을 보관, 판매

II

조치 계획

불법 시설물 철거 지시 및 미 철거 시 강제 정비 시행 통보

- 관련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 주요내용
 - 무단 설치 시설물 즉시 철거 및 미 철거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 및 형사고발 예고
- 통보방법
 - 등기우편 발송 및 무단 설치 시설물에 철거 안내문 부착

과태료 부과 요청(공사 → 서울시)

- 관련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4조 제2항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90조(과태료) 제2항 2호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의 2 개별기준 자항
- 위반 내용 :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을 기피 함
- 부과금액 : 250만원(위반횟수 2회)
 - ※'16.10.28 경매장 내에 소금 등을 무단 적치하여 1차 처분 시행

행정대집행 요청(공사 → 서울시)

- 관련근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6조(시설사용의 규제) 2호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8조(대집행)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59조(권한의 위탁)
- 시행시기, 방법 등 세부 추진계획 별도 방침 수립

관할 경찰서 고소(공사 → 송파경찰서)

○ **관련근거**

- 형법 제314조, 제319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25조 1항, 제86조 3호

○ **죄 명** : 업무방해죄, 건조물침입죄,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16.12.31 경매장 내 소금 등을 무단 적치 사유로 벌금 200만원 부과

III

행정 사항

서울시 사전 협의

○ 행정대집행 전 시행일, 방법, 인력 및 장비 등 사전 협의

변호사 자문(기획팀)

○ 고소장 작성

○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법률 검토

따로붙임 : 1. 무단설치 시설물 철거 안내문(불법 시설물에 부착) 1부
2. 수족관 이동 동영상 1부(별도 첨부) .끝.

따로붙임 1)

무단 설치 시설물 철거 지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장소는 수산시장 배송복도로 수산물 유통을 위한 필수 시설입니다. 귀하의 불법시설물로 인해 중도매인들이 물량 배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산시장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수산물 판매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가 이러한 지시에도 위법 행위를 지속할 경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형법 등에 의해 과태료, 행정대집행 및 형사 고소 등에 처해질수 있으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 장